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2021. 9.



광진구의회

제 출 문

광진구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광진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9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자 최 인 혜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참여 의원



의장 박삼례



대표의원 김미영



간사 이명옥



참여의원 고양석



참여의원 장길천



참여의원 추윤구

목 차

I 연구 개요	1p.
II 연구 추진 방향	3p.
III 인력투입 및 과업분담 내용	4p.
I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5p.
V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11p.
VI 광진구 위탁 관계조례 문제점(총괄)	25p.
VII 광진구 위탁 관계조례 유형별 문제사례	29p.
VIII 광진구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현황	39p.
IX 광진구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검토	45p.
X 광진구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157p.

□ 과업명 : 광진구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1. 연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으로 정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위탁 관련 조례의 발굴
- 법령에서 광진구청장에게 위탁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법령과 충돌하는 광진구의 위탁 관계 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합리적인 보완 방향 제시
- 광진구 사무 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 제도의 법리 및 절차·방법 등을 먼저 이해하고 위탁 행정 실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공서비스의 질(Quality)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의 완성을 기하고자 함
-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기능 강화 및 연구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2.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부패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이를 조속히 개정 및 보완함

-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상위 법률에서 광진구청장이 위임·위탁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 ➔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으로 행정 권한자의 주체를 바꾸려 하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 현재 광진구에서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 중인 관계조례와, 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 등)의 위탁 관계조례를 추출하여 상위 법률상 위탁의 법적근거, 법정 수탁대상기관의 적정성, 그밖에 절차 등에 있어서 법령 적합성 여부를 중점 검토
 - ➔ 조례상 위탁의 법적근거 유무, 법정 수탁대상기관의 법적지위 가능 여부(법령상 자격 부여 등), 그밖에 위탁 관계조례의 절차적 사항들이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 ➔ 상위 법령상 기본조례(일반조례) 및 개별조례에 위임 근거 여부 검토
 - ➔ 상위 법령과 조례,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간 불부합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비 방안 제시

II

연구 추진 방향

1. 연구 수행에 따른 법적 논거

- 상위 법령상 명문의 근거 규정
- 사법부(법원) 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 기타 정부 소관부처 예규(지침) 등

2. 연구 수행방법

- 현행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 현행 위탁 관계조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검토
-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계조례 비교·검토
- 정비 대상 조례 발굴 후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제시

3. 기타

- 조례상 위탁의 법적근거 유무 검토
- 조례상 법령 위임 적합성 여부 검토
- 위탁사무별 관계 조례 설치 여부 검토
- 조례상 입법미비로 법적 안정성 저하 규정 검토

Ⅲ

인력 투입 및 과업 분담 내용

▣ 연구 인력 및 약력

연구자	책임 구분	현직 및 주요 경력
최인혜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 고려대 국제관계학 박사
배석주	[공동연구원] 정비 대상 조례 발굴·검토 및 정보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대 행정학 박사 · (현) 한국외대 외래교수 · (전) 조순형 국회의원 보좌관

▣ 과업 분담 내역

직책	성명	업무 분장 내역
연구책임자	최인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프로젝트 진행 총괄
공동연구원	배석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 대상 조례 발굴 및 검토 · 판례 및 기관 의견 등 취합 · 문헌 정보 조사 등

I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기능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근거, 입법 한계,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헌법」

제117조 ①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갖는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고유사무라고도 함)를 처리할 수 있는 외에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사무도 함께 수행
-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는 자치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성도 있기에 사무의 배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규정
- 주 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노력 의무, 조직과 운영, 규모의 합리화·적정성 의무, 법령 또는 상급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의무 등

□ 법령 준수 의무는 자치사무가 법령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특히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준수 의무의 경우, 상급 자치단체는 하급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하 자치단체 사이에 늘 그러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러한 지도·감독의 의무는 법령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원칙임

다. 자치사무 확보에 관한 의미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함

- 위임사무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뉜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상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임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자주적 책임 하에 처리되며 취급과 집행에 있어서 고유사무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류】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고유사무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위임
근거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법령으로 정한 사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경비 부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보조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사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	전액 국비 보조로써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동책임	국가 책임
법령 규정 형식	법령상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치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법령상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국가 또는 광역단체가 지자체에 위임한다.”라는 규정 “~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규정 외에 법령에 “시·도 또는 시·군·구는 ~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법령에 “○○장관은 ○○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외에 “~을 하려는 자는 ○○○장관의 ○○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중,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국가의 감독	소극적 감독	소극적 감독 (제한적) 적극 감독	소극적 감독 적극적 감독
지방의회 의 관여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 경비 부담에 외에는 사무 처리에 관여할 수 없음

V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행정권한 법정주의(行政權限 法定主義)】

“행정기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그 권한을 변경하는 위임·위탁 시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따라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10.31. 결정 2001헌라1),
- 행정기관이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가능하다(법제처-의견제시 사례).

1.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개념

- 사회복지 등 대주민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주민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총액임금제 등의 한계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공무원 조직과 정원, 예산 문제 등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능률성 등을 최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행정사무의 위탁이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이란,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전단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후단의 (개별)법령으로 정한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법인·단체, 기관, 개인 등 민간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대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다.

-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에 관한 고유사무 중에서 그 일부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의 범위

-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별 예시】

- 조사업무 : 자연환경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 검사·검정업무 : 특정물질 처리확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 관리업무 : 도시공원시설 관리, 도서관·박물관·환경기초시설 등
 1.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 기능
주차장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2.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 기능
건설 안전시험, 교량 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4.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 기능
조경관리, 통신 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5. 서비스 제공 기능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6. 민간이 운영 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200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실무 편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는 분류상 규제사무 이외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단순사무’ 또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 및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등이 위탁의 대상이다.

【법령상 비권력적 사무와 규제사무의 정의】

-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가 대상임
-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 등을 요하는 사무나 또는 인·허가 및 단속업무 등 권력적 행정 및 규제사무 등은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함

가. 법령상 민간위탁의 정의(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위탁

나. 법령상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허가·인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공장허가, 요식업 허가 등)
 - 그밖에 지방세 징수, 법정 부담금, 주·정차 단속 등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행위 등

2. 공공위탁

가. 공공위탁의 개념

- 공공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공공단체·공공기관)에 사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제151조)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공위탁의 범위

-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정의가 법률에서 명문화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공공단체의 해석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공공단체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대상기관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제104조 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제151조), 그 밖에 공공기관 등으로서 법적지위가 공공부문이므로 ‘공공위탁’이라 한다.

-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부 출자·출연 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공공부문의 위탁을 공공위탁으로 지칭하고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2015)

- 한편 대법원은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예산 지원 및 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법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지원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체육회, 문화원 등 공법인이 해당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권한과 책무가 따른다.

- 공공위탁의 수탁대상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 선정·공모에 참여하여 법령·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되겠다.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정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공공단체」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2009-0362, 10-0019) 또한, ‘그 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소속기관 등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15-11-10)

3. 관리위탁

가. 관리위탁의 개념

-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 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제 3자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 법상 유사 개념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정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흔히 임대라고도 한다. 주로 식당, 카페, 매점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대상이며, 사용자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 제22조의 사용료 부과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수립 시 관리방법, 수입·지출비용 등을 산출하여 그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상계의 개념이다.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나. 관리위탁의 범위

-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행정재산이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수탁기관이 하는 행위의 법적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
-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용도로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_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내지 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다. 행정사무 위탁의 특례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며, 법상 수탁대상기관은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참여가 가능
- 행정사무 위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행정안전부_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우선적으로 적용

【관리위탁 대상시설 유형별 예시】

1. 비교적 단순 서비스 관리 시설
환승주차장 및 견인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관광지 및 유적지 관리, 장묘시설(납골당, 공원묘지) 관리 등
2.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하수처리장, 재활용시설,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 등

종합운동장, 수영장, 족구장, 테니스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등

4. 시민 복지서비스 지원·관리가 효율적인 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5.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 등 도시철도시설, 산업단지 시설 등

VI

광진구 위탁 관계조례 문제점(총괄)

구 분	문 제 점	개선 방안
<p>1.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공공단체) . (공공기관)</p>	<p>□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을 보면 “광진구청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p> <p>□ 광진구는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민간위탁의 절차·방법 등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공공부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적 기본 조례 미제정</p> <p>□ 현행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이 공공부문 수탁기관의 참여를 제한</p> <p>□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의 미제정으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사무 및 절차상 하자 발생,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의결권·동의권) 침해 우려</p>	<p>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 명문화</p> <p>↓</p> <p>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을 통합하는 기본조례로 운용</p>
<p>2.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p>	<p>□ 사무의 위탁 시, 행정재산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의 관리위탁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p> <p>□ 행정재산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방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등 법령과 불부합</p> <p>□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므로, 단순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적용 불가</p>	<p>관리위탁 대상사무의 절차적 기본조례 제정·검토</p>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법제처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안건번호 : 의견 2017-01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 여부

2.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

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제2항)과 민간위탁(제3항)을 구별해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5. 6. 9. 의견제시 15-0110 참조),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대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로 하되, 수임 또는 수탁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대상 사무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되, 수탁자의 범위를 제2항보다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같은 조례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있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의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서울시장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그 사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별도의 위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VII

광진구 위탁 관계조례 유형별 문제사례

【사례 1】 조례상 위탁 계약기간이 법령과 불부합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조례에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이 상위 법령에 위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17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7.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 변경시 노동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사례 2】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 규정화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다수의 조례에서 법적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단,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문화활동시설
- 2.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

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사례 3】 조례상 위원회 구성이 법령과 불부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등 다수의 조례가 법정위원회 미구성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4. 자살예방 인력 양성
5. 자살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 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광진구 사무의 위탁 제도 운영상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제도의 개념 정의 및 이해 부족

→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혼용으로 절차상 하자가 우려되므로 법정 위탁의 개념 구분 필요

◎ 위탁 구분과 관련해 체계적 연구 및 매뉴얼 미흡으로 법령과 불부합

→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 사무의 혼용으로 개념 구분이 필요

◎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을 간과한 임의 위탁 남발

→ 사무의 위탁 시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탁하는 등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 교육 필요

◎ 사무의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만 적용해 절차적 민주성 결여

→ 위탁사무가 법적근거를 달리 함에도 민간위탁만 적용하여 법령과 불부합

【지방자치단체 위탁의 법적근거 예시】

법령구분	법정 수탁대상기관	법조문	조례
「지방자치법」	·공공위탁 → 공공단체·공공기관	제104조제2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151조	
	·민간위탁 →법인·단체 그 기관, 개인	제104조제3항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법」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제27조제1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탁관리 → 특별법상 법인	제4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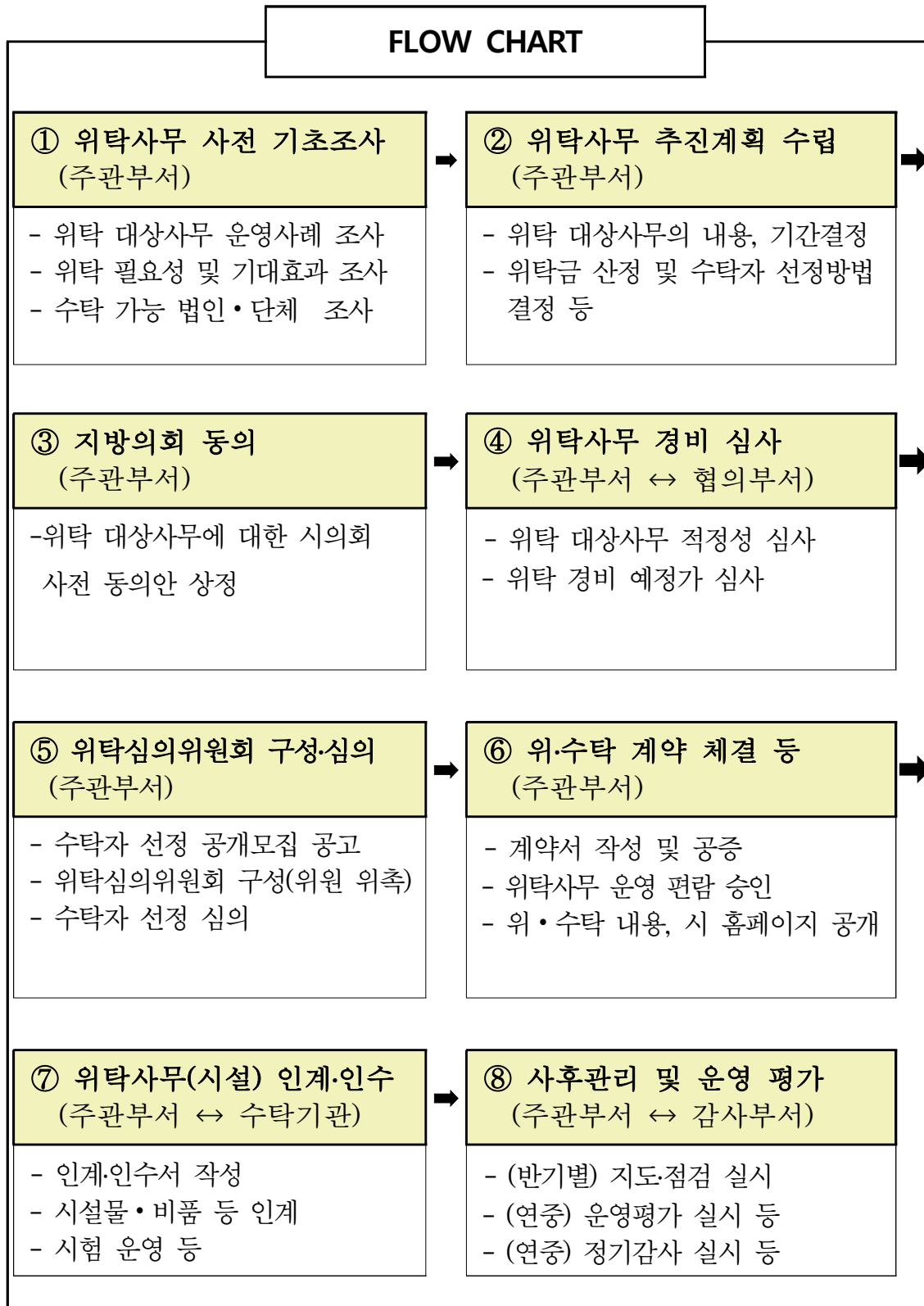
□ 광진구 사무 위탁의 제도개선 사항 요약

구분	현행	개선안
위탁 대상사무의 성질 구분	민간위탁·공공위탁, 관 리위탁·위탁관리 혼용	법정 위탁 개념 구분 필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 사 사무 혼용	유사 개념과의 구분 필요
위탁 시 적정성 판단 기준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 등 구체적 판단 기준 모호	명확한 적정성 판단 기준 제시
위탁사무의 법적근거 제시	사무 위탁 시 준용 근거 미흡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적 사항 미리 제시
자치사무 위탁 동의	사무 위탁 시 자치사무만 의회 동의를 받고 단체위 임사무는 모두 배제	위탁의 법률상 효력은 고 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모 두 동일하므로 준용
심의 위원회 적용 근거	사무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의 심의위원회가 수 탁기관을 선정해 법정위 원회가 모두 배제	법정위원회 및 임의위원 회의 개념과 상관관계 제 시로 합법성 도모
재계약(수의계약) 시 위원회 사전 평가·심의	재계약 (수의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 시 구체 적인 법적 기준이 모호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 약 평가에 따른 자격(법 적 지위) 명확화
민간위탁 조례만 적용하여 공공 부문은 모두 배제	사무 위탁 시 민간의 법 인·단체, 개인에게만 적 용하므로 공공부문이 모 두 배제되므로 법령 위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하는 사무 위탁의 기 본조례를 제정하여 법령 적합성 유지
행정재산의 위탁 조례 미제정·미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관 리·운영에 따른 위탁 조 례와 매뉴얼 미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위탁에 따른 제도 정비로 위탁사무의 합법성 유지

□ 사무의 위탁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유사 개념	내 용	근거법령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공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공공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1조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대행	1.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단체장이 대신 권한 행사	「지방자치법」 제111조
	2.업무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용역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특정재화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사업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교부	「지방재정법」 제2장의2

□ 사무의 위탁 절차도



VIII

광진구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현황

■ 광진구 위탁 관계조례 현황

(2021년 8월 현재)

총 18개 부서	위탁 기본조례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개
	위탁 개별조례	88개
	(합계)	89개

■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 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공공·민간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증진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공공·민간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국가	×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위임	×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북한이탈주민법	위임	×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공공·민간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조례	관광진흥법	위임	×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법	위임	○	민간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공공·민간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진로교육법	위임	×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위임	○	공공·민간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지방기금법	위임	○	공공·민간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역사랑상품권법	위임	○	공공·민간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법	위임	×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전통시장법	위임	○	공공·민간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근로복지기본법	위임	○	공공·민간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육성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고용정책기본법	위임	×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법	위임	○	공공·민간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위임	×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지방세기본법	위임	○	공공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발달장애인법	위임	×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노인장기요양보협법	위임	×	
2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에 관한 조례	장사법	위임	○	공공·민간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위임	○	공공·민간
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경력단절여성법	위임	×	
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	
3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공공·민간
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청년기본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3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소년기본법	위임	×	
36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학교밖청소년법	위임	×	
37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학교폭력예방법	위임	×	
3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인정보보호법	위임	○	공공·민간
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재난안전법	위임	×	
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법	위임	○	공공·민간
4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법	위임	○	민간
4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법	위임	×	
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법	위임	×	
4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법	위임	○	공공·민간
45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	
46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어린이식생활법	위임	○	공공·민간
4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감염병예방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수탁 대상기관
4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자살예방법	위임	○	민간
4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치매관리법	위임	○	공공·민간
50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모자보건법	위임	×	

IX

광진구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검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 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민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 공유를 위해 광진구가 공식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제13조(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구의 역사, 교육, 복지, 문화예술, 건강 등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3.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제15조(콘텐츠 제작) 구청장은 홍보 등을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해 매체에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콘텐츠 제작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제3항 등에 따라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상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다만, 관계법령에서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
- 광진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기본 조례”)를 제정, 민간에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상위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 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 조례	공공·민간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증진 및 지원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
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자매·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
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13조(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
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
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을 말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그 근무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국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구의 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 유적지 시찰
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결혼·생일·자녀입학·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 따른 맞춤형 복지 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다. 검토 의견 : 법상 후생복지 사업 등은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공무원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1조(파견근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해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북한 이탈 주민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공연, 전시 등 개최 및 지원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5.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육성
6.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관련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행사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의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광진구민회관의 명칭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하고 광진구에 설치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_ 제2019-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회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_고시)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으로 정해진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무 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모집 및 선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관광진흥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면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
2.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변경,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 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나. 관련 법령 : 「체육시설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공사(공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체육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_고시)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체육시설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간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사립도서관을 말한다.

제8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 영위를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 공연·전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작은도서관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 우선 적용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광진진로직업체험센터(이하 “센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진로교육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단,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문화활동시설
- 2.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

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 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제18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자치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개별조례가 입법적으로 미비
- 전자금융거래법 및 은행법상의 금융회사는 민간부문의 은행을 포함하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 등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기금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공공·민간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영대행사”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제7조(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의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 대행사와 판매 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한다)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품권의 판매를 재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상품권 발행 ·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및 은행법상의 금융회사는 민간부문의 은행을 포함하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역사랑상품권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 · 민간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고, 이 업무를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동물보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37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

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전통시장의 주차장 및 안전시설물 점검 업무는 위탁 근거가 있으나 임시시장은 위탁의 근거가 없으며, 기반 시설물의 경우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식임에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주차장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전통시장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공공·민간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법령 : 「근로복지 기본법」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근로복지 기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 노무·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공익(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 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3. 구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4.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5.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고용정책 기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제3항과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나.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입법미비 및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공유재산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공·민간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건강가정기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등록 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사무의 위탁 시 구의회 동의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기본조례가 민간부문에만 적용하고 있어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지방세기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공공 (지방자치단체)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관장) 광진구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의 명칭 및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 자양종합사회복지관
3.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정원 및 입·퇴소 등) 이용 정원 및 입·퇴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공공·민간

26.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복지시설 확충 등)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 장애인쉼터”)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발달장애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단체 또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한노인회 광진구 지회

제4조(지원 내용) ① 구는 제3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시설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설날·추석 등 명절 위문 시 필요한 금품 및 행사비

제5조(사업 위탁)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노인복지사업 계획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제4조에 규정된 제반 노인복지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 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개별 조례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8. 「서울특별시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

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2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장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은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

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 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장사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공공·민간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조례」

가. 조례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광진구에 설치하는 센터 명칭은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센터”)로 한다.</p> <p>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p> <p>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p> <p>②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p> <p>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

나.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p style="text-align: center;">「다문화가족지원법」</p> <p>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p>

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 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조례	공공·민간

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경력단절여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

동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경력단절여성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3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서관의 명칭은 “광진장난감도서관” 이라 정한다.

제5조(운영) ②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

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도서관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안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위탁

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청년지원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

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청년기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3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 보장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이하 “정책”)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

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청소년기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6.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청소년 기본법」, 「학교밖청소년법」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센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할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학교밖청소년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37.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 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해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학교폭력예방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3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사람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탁) ① 법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위탁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수탁자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공공·민간

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 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재난안전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안전점검·광고물교육은 위탁할 수 있으나 현수막 지정 게시대·지정벽보판은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옥외광고물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공공·민간

4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화장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공중화장실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민간

4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의무·추진 체계 및 정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등

나. 관련 법령 :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의3(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업무의 위탁)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의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교통안전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자전거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4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주민의 공공복리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지역 대표성을 가진 주민 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3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나. 관련 법령 : 「주차장법」, 「공유재산법」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주차장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주차장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공·민간

45.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음주예방·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절주(음주예방)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46.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

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기본조례·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어린이식생활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	공공·민간

4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소독 의무 및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소독 의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감염병예방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4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 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4. 자살예방 인력 양성
5. 자살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정신건강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정신건강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1조(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

나. 관련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 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대상기관
자살예방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민간

49.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나. 관련 법령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검토 의견

- 법상 위탁 근거가 있으나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 센터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관계조례 재정비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치매관리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민간

50.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나.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 의견 : 범상 위탁 근거가 없어 개별조례가 법령 위반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조례명	수탁 대상기관
모자보건법	위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X

광진구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가. 사무의 위탁 통합 조례(안)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광진구의회는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함

나. 근거 법률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제2항·제3항, 제151조

다.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 개정 시안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p> <p>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p> <p>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p>	<p>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p> <p>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p> <p>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p>② <삭제, 2019.12.31.></p> <p>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 “좌동”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p>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위탁 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매 3회차 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7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제6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p>제7조(민간위탁의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 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구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7조의2(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2. 문화·체육·관광·독서실 및 도서관·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환경·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산업지원·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p> <p>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등 처우개선 노력</p> <p>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p>	<p>“좌동”</p> <p>“좌동”</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8조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선정, 운영상황의 평가, 재위탁 사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전문성이 확보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p>	<p>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p> <p>③ 구청장은 수의계약(재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31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재위탁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따른다.</p> <p>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p>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탁사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각종 위원회 조례” 라 한다)에 따른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p> <p>④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자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5.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2.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3. 위탁비용 적정성과 지급기준 4. 재계약 및 기간연장 시 적정여부 5.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이의신청 3. 위탁 경비 등 적정성 여부 4.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시 적격 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해당 위탁사무별로 외부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해야 할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그 밖에 위원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2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신설”</p>	<p>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 안전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p>
<p>“신설”</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은 경우</p> <p>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p> <p>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p> <p>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p> <p>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p> <p>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p>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해당</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p> <p>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p> <p>제2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2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p> <p>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탁기관의 명의로 한다.</p> <p>제13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할 경우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7.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위탁기관 변경시 노동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p>	<p>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p> <p>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의로 한다.</p> <p>제23조(계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라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7.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탁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p> <p>제14조(재계약)</p> <p>① 구청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제18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5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p>	<p>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4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한 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9조제4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제26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 (계약서에 명기)</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p> <p>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행정재산 신축·개축은 구청장 소관)</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수탁기관 재위탁은 법적근거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1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 (조항 이동)</p> <p>제28조(위탁사무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30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제20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1조(종합 성과 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 성과 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제21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2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3. 수탁기관이 구청장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시안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p>제22조(인센티브 및 패널티) ① 구청장은 제 20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비용 보전 및 연장계약(이하 “인센티브”라 한다.) 또는 위탁계약 해지·감액(이하 “패널티”라 한다.) 등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비용 보전 (금전적 보상) 2. 연장계약 3. 우수기관 표창 및 홍보 4. 국내·외 연수 등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패널티로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비용 감액 및 환수 2. 차기 입찰 참여기회 제한 <p>④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기준 및 방안은 협약서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다.</p> <p>제23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삭제”</p> <p>제33조(주민 참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위탁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현행	개정 시안
<p>「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p>	<p>「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p>
<p>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4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라. 「광진구 사무의 위탁 조례」안 (전문)

「광진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9.12.31.>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구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등 처우개선 노력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수의계약(재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31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재위탁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탁사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각종 위원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자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5.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위탁 및 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이의신청
3. 위탁 경비 등 적정성 여부
4.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시 적격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6.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

서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3조(계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7.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탁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한 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9조제4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사무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사무 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이의 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종합 성과 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성과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 성과 평가를 전문 평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3. 수탁기관이 구청장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주민 참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

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